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가합54873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 종결2015. 1. 9.

판결 선고2015. 1. 23.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057,979원 및 그 중 173,885,920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103,940,515원에 대하여는 2014. 6. 9.부터, 87,500,974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각 2014. 9.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2013. 11. 15.자 매매계약을 92,632,077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92,632,07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의 하나은행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09. 2. 20.(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1. 4. 11.(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1. 4. 14.(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회사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무렵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신용보증	114,000,000원(102,000,000원)	2010. 2. 19.(2014. 2. 14.)	하나은행	120,000,000원
제2신용보증	170,000,000원(2014. 4. 11.)	2012. 4. 11.(2014. 4. 11.)	우리은행	200,000,000원
제3신용보증	85,000,000원	2012. 4. 13.(2014. 4. 11.)	신한은행	100,000,000원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2호와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제1신용보증	2014. 6. 9.	103,940,515원	하나은행
제2신용보증	2014. 5. 30.	173,885,920원	우리은행
제3신용보증	2014. 6. 26.	87,500,974원	신한은행
합계		365,327,409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제1신용보증	102,000,000원	2014. 2. 15.~ 2014. 6. 8.	114	1.8	573,430원
제2신용보증	170,000,000원	2014. 4. 12.~ 2014. 5. 29.	48	1.9	424,760원
제3신용보증	85,000,000원	2014. 4. 12.~ 2014. 6. 25.	75	1.9	331,840원
합계			1,330,030원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구상채권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4호 참조, 이하 이 조항에 기초한 비용을 '대지급금'이라 한다) 합계는 2,400,540원이다.

다.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등

1) 피고 B은 피고 D와 사이에 2013. 11. 15. 피고 B이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303,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잔금 293,000,000원은 2013. 12. 9. 각 지급받기로 하며, 위 잔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 3)항 참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1767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3. 채권최고액 241,200,000원인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3. 4. 3.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2013. 12. 9.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013. 12. 9. 기준으로 우리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202,249,567원,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피담보채무액은 30,118,356원이었다.

[인정근거] 피고 A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라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회사, B, C에 대한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057,979원(= 대위변제금 합계 365,327,409원 + 추가보증료 합계 1,330,030원 + 대지급금 합계 2,400,54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73,885,92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5. 30.부터,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03,940,515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6. 9.부터,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87,500,97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6. 26.부터 각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4. 6.경을 기준으로 피고 A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우리은행 등에 대한 대출채무 외에도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케이비캐피탈, 현대캐피탈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대출채무를 포함하여 위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의 합계는 약 20억 원이었다.

② 그 중 피고 A회사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대출채무는 2013. 12. 31.경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대출채무와는 별개이다)는 2013. 12. 26.경부터,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는 2014. 1. 25.경부터, 이 사건 제1, 3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대출채무는 2014. 2. 15.경부터 각 연체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피고 A회사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이어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회사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제로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가지게 된 사실 또한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후구상권(구체적인 금액은 2항 참조)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산시 단원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우리은행과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는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 을라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B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 피고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매도인측 공인중개사는 E, 매수인측 공인중개사는 F)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212,000원을 F에게 지급하는 등 위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303,000,000원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범위(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300,000,000원 이상 320,000,000원 이하) 내에 있었거나 시세(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306,000,000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는바, 피고 D가 2013. 12. 9.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잔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었던 우리은행과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이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하고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말소될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유니온상호저축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는 다른 가압류나 제한물권 등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으므로, 위 등기부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 외에 다른 채무들도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 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 D가 알 수 없었고, 달리 피고 D가 피고 B의 채무 부담 내역 등 자산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 D가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김종헌

판사김윤희

별지

1)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 이하 버림